

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 (안영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56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0.

발 의 자 : 안영호, 강혜순, 정재환,
홍영진, 박경흠

1. 제정이유

울산광역시 중구가 설치·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유희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,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개방공간의 범위 등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6조)
- 라. 통합예약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바.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사. 사용허가의 우선순위, 제한,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~ 제12조)
- 아. 사용료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- 자.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- 차.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시설관리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
(안 제15 ~ 제16조)
- 카. 양도 및 전대의 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관계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 및 제28조
- 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, 제22조 및 제24조

5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예고: 2026. 3. 11. ~ 3. 18.(7일간) / 의견없음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가 설치·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,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시설”이란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설치·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개방공간”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말한다.
3. “공공시설 관리자”란 해당 공공시설의 장 또는 그로부터 운영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.
4. “이용자”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간을 확대하고,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개방공간의 범위 등)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, 개방시간 등 개방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시간) 개방공간의 운영시간은 시설의 특성, 보안 및 안전관리,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 운영기준으로 정하되,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7조(통합예약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개방공간 이용 신청, 승인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.

1. 개방공간 이용 신청 및 승인
2. 이용 가능 공간, 이용 시간, 사용료 등의 안내
3. 사용료 납부 및 반환

- 4. 이용 이력 관리 및 통계 분석
- 5. 그 밖에 개방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시설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설 별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- 1. 개방 가능 요일 및 시간
- 2. 이용 대상 및 우선순위
- 3. 사용 제한 사항
- 4. 예약 가능 횟수 및 취소 기준

제8조(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관리) ① 구청장은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시스템 장애 및 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용신청 및 허가)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는 자는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사용허가 시 사용시간, 준수사항, 사용료 납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10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- 1. 구 또는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행사
- 2. 주민자치·마을공동체 등 공익적 활동
- 3.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
- 4. 그 밖의 주민 모임 및 행사

제11조(사용허가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공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.

- 1. 법령 또는 공공질서·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
- 2. 시설의 안전 또는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3. 영리 목적이거나, 특정 정당·후보자 지지 또는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4. 그 밖에 시설의 설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

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)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
2. 허위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3. 긴급한 공공업무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13조(사용료 부과 및 감면) 구청장은 개방공간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으며, 사용료는 공공시설 관련 조례에 따른다. 다만, 공익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용료의 반환) 천재지변 또는 구의 사정으로 개방공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5조(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) 이용자는 개방공간 이용 중 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시설관리자의 책임) 공공시설 관리자는 시설 관리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7조(양도 및 전대의 금지) 이용자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[별지 제1호서식]

공공시설의 유희공간 사용신청서

(앞 면)

신청인	개 인 ()	성 명			전화번호			생년월일		
		주 소								
	단 체 ()	단체명			대표자			전화번호		
		주 소								
사용시설 및 공간										
사 용 일 시		년 월 일(요일)			시	분부터				
		년 월 일(요일)			시	분까지(주 회, 총 회)				
사 용 목 적										
사 용 인 원		총 명			주 차 차 량			총 대		
그 밖 에 참 고 사 항										
사 용 료		금	원(₩)							

「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이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: (인 또는 서명)

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

(뒷면)

【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】

○ () 시설의 유희공간 이용 신청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-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※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시에는 서비스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.

※ 개인정보를 수집, 이용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【 개인정보 수집 목적 】 : 접수, 처리, 서비스 통계, 만족도 조사

【 개인정보 보유기간 】 : 3년

※ 정보제공 동의 해지 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상기 명시한 정보보유 사유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파기하며, 개인정보취급이 제3자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도 파기하도록 지시합니다.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관 계 법 규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- 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- 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- 차. 주민등록 관리
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주민의 복지증진

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- 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- 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- 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0조(사용허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2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

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·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(原狀)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.

제22조(사용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(料率)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 다만, 연간 사용료가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. 다만,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.

④ 삭제

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2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
3.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
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.

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·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2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
3.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,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
4.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작성자

- 소 속: 회계과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- 이 름: 정보영
- 연락처: 290-3912